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부천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제정 2018.06.18. 규정 제4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도시공사가 건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건물, 시설물, 토지 및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관리 활동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분담)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안전관리 지도교육 및 계몽, 안전사고보고, 사고 원인분석 및 사후조치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는 담당부서 또는 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시행한다.

제 2 장 안전 관리 운영

제4조(안전점검체계) ① 공사의 안전점검 체계는 분기별 안전점검, 월별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점검반의 편성, 점검시기 및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분기별 안전점검

가. 편성 : 담당부서의 장, 팀장

나. 점검시기 : 매분기별 1회

다. 점검범위 : 담당 사업장

2. 월별 안전점검

가. 편성 : 공사감독자, 현장소장 및 현장 안전관리자

- 나. 점검시기 : 월별 1회
 - 다. 점검범위 : 담당 사업장
3. 수시 안전점검
- 가. 편성 : 수시편성
 - 나. 점검시기 : 수시
 - 다. 점검범위 : 담당 사업장

제5조(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각종 소방설비 및 기구, 안전장치 등의 점검 및 정비
 - 나. 각종 시설의 안전유지
 - 다. 안전한 근무 및 작업환경 조성
 - 라. 소화 및 피난 등 긴급사태에 대처한 훈련
 - 마. 안전사고 요인 적출
 - 바. 동별 책임자 및 기능별 책임자 선임
2.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나. 도급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사항
 - 다. 위험작업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 라. 보호장구 사용 및 정해진 안전표지 부착
 - 마. 각종 중기차량 등의 안전운행과 도로정비
 - 바. 현장 안전회의 개최
3. 해빙기, 강우기, 월동기에 대비한 붕괴, 매몰, 낙반 등 용지의 안전예방에 관한 사항
4. 상·하수도, 전기, 전화, 도시가스 및 그 밖의 중요 공중별 안전

에 관한 사항

5. 해상 및 수중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점검 활동) ① 공사가 관리 또는 건설중인 시설물의 안전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은 수시로 이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작성 담당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안전점검표에 따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를 관장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준공검사자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준공안전일지에 따라 확인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지시키고 안전관리담당자를 두게 하여 이의 이행상태를 일일점검표 별표 1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일일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반의 임무) ① 안전점검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 안전시공 이행 여부와 안전에 대한 위해 요소의 종합적인 점검
2. 불완전한 요소의 발견시 직원에 따른 공사중단 및 신속한 보강 요구
3. 취약 사업장의 중점, 반복 점검으로 불안요소 사전 제거
4. 지적사항에 대한 보강완료 시까지의 지속적인 점검, 시정
5. 현장종사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계몽

② 점검반원은 안전유지 및 현장 종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장에 점검반원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지시 및 조치책임) ① 점검반이 적출한 점검 지적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고 중요한 지적사항은 점검사항처리 지시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의무와 책임은 시설공사 계약조건에 따른 점검반이 지적사항 시정 완료 시까지 계속 확인 관리한다.

제9조(안전표지의 설치)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물 적치장소
2. 중장비 작업장
3. 변압기 설치장소 및 고압전선 통과 장소
4.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설치장소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한다.

1. 금지표지 :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들에게 금연, 화기금지 등 유해행위의 금지가 필요한 시설물이나 장소에 부착한다.
2. 경고표지 : 위험시설,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가 필요한 시설물이나 장소에 부착한다.
3. 지시표지 :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모 착용 등 지시가 필요한 장소나 시설물에 부착한다.
4. 안내표지 : 위험장소로부터 안전한 대피나 응급구호를 안내하는 표지로써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구간에 부착한다.
5. 교통표지 : 건설공사로 인한 통행의 금지, 제한, 경고 및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표지로 도로 주변에 부착한다.

③ 안전표지의 제작요령은 별표 2, 안전표지 기본모형 및 색채는 별표 3, 안전표지 일람표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안전수칙) 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주의 사항은 이를 안

전수칙으로 정하며, 안전수칙의 대상 및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내용은 안전수칙 별표 5와 같다.

1. 보일러실
2. 변전실
3. 가스용기 사용시설
4. 인양기
5. 작업현장

제11조(지원) ① 점검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당 및 그 밖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안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차량 등의 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제 3 장 사고의 처리

제12조(사고의 구분) 사고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대한 사고
 - 가. 사망 및 중상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고
 - 나. 물자피해가 다량 발생한 사고
 - 다. 대외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사고
2. 경미한 사고
 - 가. 경상자가 발생한 사고
 - 나. 물자피해가 경미한 사고
 - 다. 대내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고

제13조(사고발생보고)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

급조치를 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담당부서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치료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그 밖의 사고처리에 필요한 활동

제15조(사고조사) ① 안전사고 조사는 담당부서에서 하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 조사를 위하여 담당부서에서는 현장보존, 증거보존 등 사실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처리 보고) 담당부서의 장은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상 및 제재조치

제17조(포상) 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관리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담당부서에 그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제재조치) 점검반이 제8조에 따라 발부한 점검사항 처리지시서에 대한 시정조치가 소정 기일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감독 및 현장소장과 현장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별표 6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2018.06.18. 규정 제4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 일 점 검 표(제6조제4항 관련)

구 분	점 검 사 항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 위험개소에 안전표지는 부착되어 있는가? · 보호장비 착용상태는 양호인가? · 야간작업 시 충분한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위험지역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는가? · 중기사용 시 안전신호 및 연락은 잘되고 있는가? · 허약자 및 음주자가 작업하는 사례는 없는가? · 단지 내 배수처리는 완전한가? · 가설사무실 및 노무자 숙소, 현장식당에 화재위험은 없으며,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가? · 응급복구 자재확보는 되어 있는가? (양수기, 가마니, 보호천막, 비닐, 새끼 등)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는 로프에 결점은 없는가? · 낙하물 방지망은 안전하게 설치되었나? · 비계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비계다리에 미끄럼막이는 되어 있는가? · 굴착 중 붕괴우려는 없는가? · 약천후 시 취약개소를 점검 보완하는가? · 가연성 도료 및 자재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 자재적재상태는 양호한가? · 콘크리트 타워 및 타워크레인의 방뢰설비는 되어있는가? · 용접시공 시 용접기능자격 소지자 확인 및 누전점검은 실시하였는가?
토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절취 시 낙석위험은 없는가? · 우기 시 유실붕괴 우려는 없는가? · 석축 및 옹벽 기초부분은 안전한가? · 폭파작업 시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깊은 터파기시 안전구획은 확보되어 있으며, 완료 후 안전울타리 설치는 되어 있는가?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압장비는 시험을 거친 후 가동하는가? · 각종 기기의 접속 및 조임은 양호한가? · 작업종류별로 자격이 있는 자가 작업하는가? · 전기시설물 주변에 인화성 물질은 없는가? · 임시동력배선의 절연상태 및 분전반 설치장소의 출입통제는 되는가? · 불량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임시동력 배전선과 가설물 및 작업장과의 이격거리는 충분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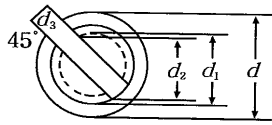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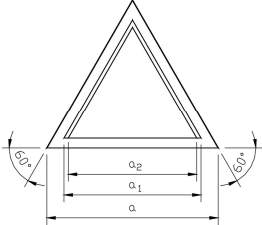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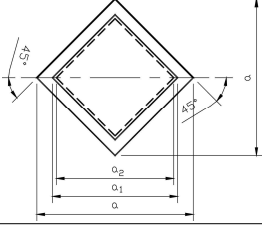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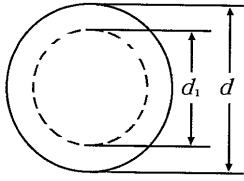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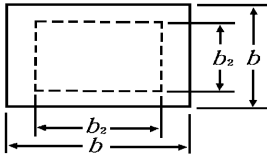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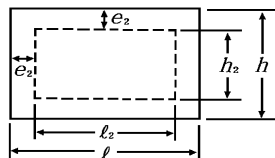
[별표 2]

안 전 표 지 의 제 작 요 령(제9조제3항 관련)

1. 안전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용도에 따라(별표4 안전표지일람표 중에서) 그 해당하는 안전표지를 선택한다.
2. 선택한 표지의 기본모형, 규격, 색채는 별표 3 안전표지의 기본모형 및 색채에서 정한 대로 사용하되 규격이 사용장소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격이 정한 비율대로 정하여 그 규격을 정하도록 한다.
3. 기본모형 안에 들어가는 그림 또는 부호는 별표 4를 참고하여 적절히 그린다.
4. 안전표지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안전표지의 적당한 위치에 그 표지 사항을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안전표지 크기에 어울리는 적당한 글씨 크기와 굵기로 쓴다.
5. 안전표지의 재료로는 아크릴, 베니어판 또는 안전표지 제작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야간에 필요한 안전표지에는 조명등을 설치하거나 야광물질을 사용하여 제작 부착한다.

[별표 3]

안전표지 기본모형(제9조제3항 관련)

번호	기본모형	규격비율	표시사항
1		$d \geq 0.025L$ $d_1 = 0.8d$ $0.7d < d_2 < 0.8d$ $d_3 = 0.1d$	금지
2		$a \geq 0.034L$ $a_1 = 0.8a$ $0.7a < a_2 < 0.8a$	경고
		$a \geq 0.025L$ $a_1 = 0.8a$ $0.7a < a_2 < 0.8a$	
3		$d \geq 0.025L$ $d_1 = 0.8d$	지시
4-1		$b \geq 0.0224L$ $b_2 = 0.8b$	안내
4-2		$h < L$ $h_2 = 0.8h$ $L \times h \geq 0.0005L^2$ $h - h_2 = L - L_2 = 2e_2$ $L/h = 1, 2, 4, 8$ (4종류)	안내

(참고)

1. L=안전·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하여야 할 안전거리를 말한다(L과 a, b, d, e, h, l은 동일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점선 안에는 표시사항과 관련된 부호 또는 그림을 그린다.

안전표지의 색채(제9조제3항 관련)

색채	용도	사 용 례
빨강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노랑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
파랑	지시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정색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별표 4]

안전표지 일람표(제9조제3항 관련)

1. 금지표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립된물체경고	낙하물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경고	레이저광선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성물질경고	위험장소경고	3. 지시표지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안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4.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기구	비상구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5. 관계자의 출입 금지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 급 실험실 등	
				<p style="text-align: center;">관계자의 출입 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 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p>	<p style="text-align: center;">관계자의 출입 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p>	<p style="text-align: center;">관계자의 출입 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p>	
6. 문 자 추 가 시 예 시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별표 5]

안 전 수 칙(제10조제2항 관련)

1. 보일러실 안전수칙

- 가. 근무 중 취침, 음주, 이석 및 관계자 외 출입 등을 일체 금한다.
- 나. 가동 전 밸브, 연소장치, 급수장치, 자동제어장치, 펌프, 계기등의 유무를 철저히 점검 한다.
- 다. 점화전 탬퍼의 기능 및 개폐상태 확인과 3분 이상 통풍하여 가스폭발요인을 사전 제거한다.
- 라. 점화 실패 시 즉시 연료차단과 동시 제4호 조치를 취한 후 재점화한다.
- 마. 안전밸브를 임의 조정하거나 제한압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바. 각종기기 이상 발견 시는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 사. 점유관의 누유 유무를 실시 확인하고 흘린 기름은 즉시 제거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아. 소화기구 사용법을 숙지하고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정위치에 둔다.
- 자. 실내에 인화물질의 반입을 일체 금한다.
- 차. 공구는 일정장소에 비치하고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유사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카. 근무자는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긴급연락계통을 항상 숙지한다.
- 타. 근무교대 시 근무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한다.

2. 변전실 안전수칙

- 가. 근무자는 항상 정위치를 이탈할 수 없다.
- 나. 변전실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한다.
- 다. 운전 및 작업의 책임구분은 명확히 한다.
- 라. 각종 기기는 수시 점검하고 이상 시는 전기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 마. 점검 및 보수사항은 항상 기록 유지한다.
- 바. 점검 및 보수는 반드시 정전한 후 행한다.
- 사. 운전조직은 2인 이상으로 행한다.
- 아. 각종 기기는 신속, 정확, 안전하게 조작한다.
- 자. 송신, 정전작업 중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한다.
- 차.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카. 현장에는 관계도면 및 계통도를 비치하고 근무자는 이를 숙지한다.
- 타. 근무자는 소화기구 위치 및 운영방법을 숙지하여 항상 정기 점검한다.

3. 가스 안전수칙(세대별 가스용기 사용시설)

- 가. 연소기구(가스렌지)는 항상 청결하게 사용한다.
- 나. 연소기구 연결부분은 수시로 비눗물을 칠하여 새는가를 확인한다.
- 다. 가스용기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만약 누설되면 지면에 가스가 체류하게 되므로

화기에 접하게 되면 폭발을 일으킴)

라. 가스용기는 그늘이 지도록 차양시설을 한다.

마. 가스가 누설되면 냄새(악취)가 나므로 이때는,

- 1) 일체의 화기를 금한다.
- 2) 콕크가 꼭 잠기어 있나 확인한다.

그래도 누설되면 용기의 밸브를 잠그도록 한다.

- 3)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한다.
- 4) 즉시 가스판매소로 연락한다.

바. 점화 시에는 연소기구에 불꽃을 접촉시킨 후 가스콕크를 열어 사용한다.

사. 사용중 바람이나 국물이 넘쳐서 불이 꺼지는 수가 있으므로, 수시로 불꽃을 확인하면서 사용한다. 만약 불이 꺼지면 즉시 콕크를 잠그고 환기시킨 후 다시 점화한다.

아. 가스용기나 콕크 등에 충격을 주거나 여타 물건을 걸어 놓는 등 가스시설에 접촉이 안되도록 조치한다.

자. 호스나 연결구, 연소기구 등이 노후된 것을 새것으로 교환하여 사용한다.

차. 기구는 검사품 인가를 확인 후 사용한다.

카. 사용치 않거나 취침 시, 외출 시는 용기밸브를 잠궜는다.

타. 가스의 모든 것(문의, 점검, 수리)은 언제든지 가스판매소로 연락한다.

4. 가스안전 수칙(도시가스, 엘피가스 집단공급 사용시설)

가. 연소기구(가스렌지)는 항상 청결하게 사용한다.

나. 연소기구 연결부분은 수시로 비눗물을 칠하여 새는가를 확인한다.

다. 가스가 누설되면 냄새가 나므로 이때는,

- 1) 일체의 화기를 금한다.
- 2) 콕크가 잠기어 있는가 확인한다.

그래도 누설되면 메타콕크(가스메타 입구측)를 잠궜야 한다.

- 3)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 4) 즉시 가스관리소로 연락한다.

라. 점화 시에는 먼저 연소기구에 불꽃을 접촉시킨 후 가스콕크를 사용한다.

마. 사용 중 바람이나 국물이 넘쳐서 불이 꺼지는 수가 있으므로, 수시로 불꽃을 확인하면서 사용한다. 만약 불이 꺼지면 즉시 콕크를 잠그고 확인한 후 다시 점화한다.

바. 가스메타나 콕크 등에 충격을 주거나 여타 물건을 걸어놓는 등 가시시설에 접촉이 안 되도록 조치한다.

사. 호스나 연결구, 연소기구 등 노후된 것은 새것으로 교환하여 사용한다.

아. 기구는 검사품 인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자. 사용치 않거나 취침 시, 외출 시는 반드시 메타콕크(가스메타 입구측)를 잠궜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차. 매월 가스 관리원의 안전진단을 받는다.(무료)

카. 가스의 모든 것(문의, 점검, 수리)은 언제든지 가스판매소에 연락한다.

5. 인양기 안전운전 수칙

가. 운전자는 운전 중 승강-카에서 지상으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운전자는 점검표에 따라 사용 전 점검을 반드시 할 것.

다. 운전자는 작업구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인양기를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 단단히 고정시킬 것.

라. 운전자는 작업 중 잡담이나 한눈을 팔지 말 것.

마. 운전자는 적재 또는 탑승상태를 점검하고 승강-카의 평형을 유지할 것.

바. 운전자는 승강-카가 타 구조물과 접촉 또는 충돌하지 않도록 할 것.

사. 운전자는 이상음이나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제거할 것.

아. 운전자는 승강-카를 정비 후 지상의 지정된 장소에 놓을 것.

자. 운전자는 타인이 인양기에 손대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할 것.

6. 현장 안전수칙

가. 모든 작업원은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한 후 작업에 임하자.

나. 작업에 간편한 복장으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자.

다. 불필요한 행동이나 불안정한 작업태도를 버리자.

라. 모든 작업은 작업순서를 지키고 서두르지 말자.

마. 작업장은 항상 정리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고 주위환경을 정화하자.

바. 모든 자재는 규격별로 안전하고 적절하게 적재 보관한다.

사. 그 밖의 상사의 지시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자.

7. 용접성 가스용기 취급 주의사항

가. 아세틸렌이나 엘피가스를 사용하는 용접 시에는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넓은 장소에서 작업할 것.

나. 가스용접에 사용하는 가스용기는 이동하거나 운반할 때 반드시 밸브를 꼭 잠그고 밸브의 개폐는 조심성 있게 다룬다.

다. 빈 용기는 “사용끝” 또는 “빈통” 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밸브를 꼭 조이고 가스가 들어 있는 용기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저장할 때는 통풍이나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다 용기를 세워둔다.(용기의 온도 40℃이하 유지)

마. 용기는 넘어뜨리거나 다른 물체와 충돌해서는 안된다.

[별표 6]

제 재 조 치(제18조 관련)

구 분 회 수	현 장 감 독 및 관 리 책 임 자	현 장 소 장 및 안 전 관 리 담 당 자	비 고
1차 불이행	독 축	독 축	서 면 통 지
2차 불이행	경 고	경 고 권 유	시 공 회 사 사 장 에 게
3차 이상 불이행	징 계 위 원 회 회 부	인 책 권 유	"

[별지 제1호서식]

설 계 안 전 점 검 표(제6조제2항 관련)

점검일자 : 작성자 (인)

결 재	담 당	팀장	부서장

구분	점 검 사 항	이상 유무	비 고
건 축 설 계	1. 건축 관계법규에 적합한가? 가. 계단의 구조 나.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다. 복도의 폭 라. 직통계단의 설치 마. 피난계단의 설치 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사. 옥상광장 아. 승용승강기의 설치 자.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차. 굴뚝 2.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가. 옥내저장소의 기준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다.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라.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마.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바. 옥외저장소의 기준 3. 위험개소 및 저수조, 비상우물 등에 보호책이나 시건 장치를 설치했나? 4. 발코니 및 계단, 옥상난간은 준공 후 장기간 파손의 우려가 없겠는가?		
건 축 설 계	5. 창문과 방바닥은 너무 낮지 않은가? 6. 지반조사결과에 따라 기초구조는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7. 콘크리트설계 기준 강도는 적정한가?		

구분	점 검 사 항	이상 유무	비 고
	8. 각종 하중에 대한 구조설계의 안전여부? 9. 발코니 구조설계는 안전한가? 10. 공사시공중 적재하중의 편재에 대한 고려가 되었는가? 11. 가설공사(비계설치, 콘크리트타워보호망)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		
토 목 설 계	1. 공동구 등 지하구조물 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은 설계에 고려되었는가? 2. 우수정화시설, 지하수조 등의 지하구조물 노출부분이 외적 요인으로 파괴되지 않으며, 입주자 보행등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는가? 3. 단지 경계부분 및 단지 내의 절개지와 법면의 보호공은 적절하며 폭우시 안전한가? 4. 구조물간의 시공 이음부분 및 접합부분의 처리는 적정한가? 5.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계가 안전을 위한 제반사항이 고려되어 설계되었는가? 6. 고저차가 큰 계단형단지내에서의 난간보호는 고려되었는가? 7. 석축 및 옹벽의 안전율은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장기간 경과 후에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8. 각종 맨홀 뚜껑은 예상되는 제반 외적요인에도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9. 아파트 주위 지표수가 아파트 지하핏트 및 전기실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가? 10. 예산부족을 이유로 상응치 않은 구조물로 설계되지 않았는가? 11. 단지 외곽으로부터 단지 내에 유입되는 우수의 처리시설과 단지 내를 횡단하는 기존 배수로의 배수처리가 반영되었는가? 12. 옹벽에 연한 법면의 상단에 인명보호를 위한 시설(철책, 가타)이 설계에 반영되어있는가? 13. 맨홀 및 정화조뚜껑은 중량적재에도 견딜 수 있게끔 견고한가?		
기 계 설 비 (소 방 설 비)	1. 소화설비는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가. 소화기의 수량 및 설치위치 나. 옥내소화전 수량 및 설치위치 다. 스프링클러 설비 라. 옥외소화전 설비 마. 동력소방펌프 설비 바. 연결송수관 설비 사. 연결살수 설비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구분	점 검 사 항	이상 유무	비 고
	아. 소화용수 2. 유류저장탱크는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가. 옥내저장소 나. 옥외저장소 다. 지하저장소 라. 간이저장탱크		
(가 스 사 용 설 비)	1. 고압가스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2. 각동 및 입상관이 분기되는 곳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였는가? 3. 배관은 옥외배관을 하였는가? 4. 배관자재는 관련기관의 공인규격품(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설계되었는가? 5. 기밀시험 및 내압검사는 설계에 반영되었는가?		
(기 타)	1. 옥외설비배관의 용접부위 비파괴검사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가? 2. 보일러는 보일러설치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3. 압력용기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4. 안전밸브의 구조성능 및 규격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전 기 설 계	1. 발전설비 가. 발전기용량 및 보호장치의 선정은 적정한가? 나. 안전은 충분히 고려한 설계인가? 2. 변전설비 가. 변압기 용량 및 각종 보호장치의 선정은 적정한가? 나. 변전실의 누수, 침수 그 밖의 안전성은 검토했는가? 다. 감시 및 조작에 불안개소는 없는가? 라. 접지시설은 적정한가? 3. 펌프설비 가. 모터의 보호장치는 적정한가? 4. 소방설비는 관계법규에 적합한가? 가. 자동화재탐지 설비 나. 비상경보설비 5. 피뢰설비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설되어 있는가? 6. 옥외가공선로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적합한가?		

[별지 제2호서식]

준 공 안 전 일 지(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점 검 사 항	이 상 유 무	비 고	
				점검일자 : 작성자 인
건 축 건 축	1. 다음 사항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 가. 기초 및 지정 나. 계단 및 계단참 치수 다. 방화구획 라. 복도의 유효폭 마. 옥상, 발코니, 난간의 높이 바. 피난계단 및 특별계단의 구조 사. 굴뚝 아. 옥내저장소 자. 옥외저장소 차. 옥외탱크저장소 카. 지하탱크저장소 타. 간이탱크저장소 2. 모든 자재는 규격품으로 소정의 검사 및 시험 결과 합격판정을 받았는가? 3. 위험개소 및 저수조 비상우물 등에 보호책이나 시건장치는 설치되었는가? 4. 발코니난간, 계단난간, 옥상난간, 철재계단 등은 준공 후 장기간 동안 파손의 우려가 없겠는가? 5. 옥상층의 누수 및 전기실, 변전실, 보일러실, 지하매설물의 우수, 지표수의 유입가능성은 없는가? 6. 철근규격, 본수, 배근상태,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의 정확성을 기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 7. 콘크리트 공사는 배합비, 타설순위, 이어붓기, 진동기 사용, 피복두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구 분	점 검 사 항	이상 유무	비고
	<p>계, 거푸집 존치기간, 양생 등에 정확성을 기하여 시공되었는가?</p> <p>8. 각종 창호는 태풍 등 상당한 수평력에도 탈락되지 않겠는가?</p> <p>9. 기와는 낙반의 우려가 없겠는가?</p> <p>10. 피·씨제품의 설치 조립상태는 양호한가?</p> <p>11. 각종 설비기구 및 반자등 실내장식품은 낙반의 우려가 없는가?</p> <p>12. 설계도서외의 상이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개소는 없는가?</p>		
<p>토 목</p> <p>토 목</p>	<p>1. 모든 자재는 규격품으로 소정의 시험 및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았는가?</p> <p>2. 법면의 면고르기 및 다짐상태, 석축, 옹벽의 구배, 배수공 끝마무리상태, 배수로 등은 이상적으로 시공되었는가?</p> <p>3. 각종 맨홀뚜껑은 외적요인으로 탈락, 파손의 우려가 없게끔 견고하게 제작되었나?</p> <p>4. 오수정화시설, 지하저수조 등 지하구조물 노출부분은 외적요인으로 파손의 우려가 없으며, 입주자들의 보행 등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는가?</p> <p>5. 배수관, 맨홀, 암거, 그 밖의 구조물의 규격은 확실하며 시공상태는 견고하게 축조되었는가?</p> <p>6. 지하저수조, 공동구 등 지하구조물은 우수, 지표수의 유입 및 누수가 없게끔 완벽하게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는가?</p> <p>7. 구조물의 시공이음부 및 접합부의 시공처리 상태는 이상적인가?</p> <p>8.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은 이용상 탈락의 우려가 없도록 완벽하게 접합되었는가?</p> <p>9. 쓰레기통의 배수로 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되었는가?</p> <p>10. 도로포장의 표층, 중간층, 기층의 재질 및 두께, 표면구배 물고임 등은 적절하게 시공되어있는가?</p> <p>11. 철근규격, 본수, 배근상태,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의 정확성을 기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p>		

구 분	점 검 사 항	이상 유무	비고
	12. 콘크리트공사는 배합비, 타설순서, 이어붓기, 진동기 사용, 피복 두께, 거푸집존치기간, 양생 등에 정확성을 기하여 시공되었는가? 13. 고저차가 큰 계단형 단지내에서의 보호난간설치는 적절하게 시공되었는가? 14. 단지 경계부분 및 단지내의 절개지는 폭우 시에도 안전하게끔 시공되었는가? 15. 설계도서와의 상이, 시공 상의 하자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개소는 없는가?		
기 계 (가 스 설 비)	1.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 2.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가? 3. 가스플랜트시설은 통제구역으로 완벽하게 시공되었는가? 4. 각동 및 입상관 분기되는 곳에 차단밸브는 설치되었는가? 5. 배관은 옥외배관이 되었는가? 6. 누설검사는 시행되었는가? 7. 가스배관은 타배관과 구분이 용이토록 되었는가? 8. 배관의 노출부분은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었는가? 가.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부분 나. 사람의 접촉이 예상되는 부분 다. 가연기구로부터의 격리 · 전선 또는 금속전선관 : 15센티미터이상 · 전기소켓꽃이 : 60센티미터이상 9. 가스계량기는 바닥으로부터 160센티미터인 곳에 설치되었는가? 10. 시설은 반드시 점검하고 부분시험을 거친 후 가동하였는가?		
전 기 전 기	1.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 2. 전기설비기준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가? 가. 변전설비 나. 동력설비 다. 간 선 라. 배 선 마. 접 지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구 분	점 검 사 항	이상 유무	비고
	<p>바. 피뢰설비 사. 지중케이블</p> <p>3. 모든 자재는 규격품으로 소정의 검사 및 시험결과 합격판정을 받았는가?</p> <p>4. 제반운전반 상태는 양호한가?</p> <p>5. 변전실, 기계실은 분리하여 안전구획이 확보되어 있는가?</p> <p>6. 타시설과 근접하여 시공된 것은 없는가?</p> <p>7. 절연 및 접지지형은 정상치인가?</p> <p>8. 모든 케이블선 및 기기 등은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있는가?</p> <p>9. 각종 기기의 접속 및 조임은 불량한 것이 없는가?</p> <p>10. 세대 전 전압은 정상인가?</p> <p>11. 소방설비는 완벽하게 시공되었는가?</p> <p>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나. 전기화재경보기 다. 화재속보설비 라. 비상경보설비</p> <p>12. 가스배출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p>		

[별지 제3호서식]

안 전 일 지(제6조제4항 관련)

20 년 월 일		결	담 당	관 리 자
		재		
안 전 지 시				
안 전 점 검	대 비 사 항	조 치 사 항		
교육 및 회의	참 석 자			
홍 보 실 시	방 법	내 용		수 량
	입 간 판			
	현 수 막			
	방 송			
	표 어			
	기 타			
안 전 사 고	일 시 장 소	내 용		처 리
비 고				

